



제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시 의견청취 방법 규정 신설〉  
〈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와 가족 등 좌석 연접배정 노력의무  
부여 〉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02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 목 차

|                                                              |    |
|--------------------------------------------------------------|----|
|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제2208402호) .....                                | 1  |
| Ⅰ. 제안경위 .....                                                | 1  |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Ⅲ. 검토의견 .....                                                | 3  |
| 1.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시 의견청취 방법 규정 신설(안 제12조제2항) .....          | 3  |
| 2.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와 가족 등의 좌석 연접배정 노력의무 부여(안 제17조제3항 신설 등) ..... | 10 |

##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2208402)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준호의원 등 24인
2. 제 안 일 : 2025. 2. 25.
3. 회 부 일 : 2025. 2. 2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 등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되는 서류 등이 교통약자가 실제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함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가 철도 등 교통수단을 탑승하는 경우 교통약자 좌석과 동승한 보호자 좌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운행 중 동승한 보호자로부터 적시성 있게 편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운항 중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할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이동편의시설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안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 Ⅲ. 검토의견

#### 1.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시 의견청취 방법 규정 신설(안 제12조제2항)

#####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통행정기관<sup>1)</sup>이 현행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sup>2)</sup> 이동편의시설<sup>3)</sup>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sup>4)</sup> 실시하는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견청취의 기간, 대상, 제공 자료 등 의견청취의 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의견청취 대상 법인·단체에 제공하는 자료에 ‘교통약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1)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6호)

2)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3)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歩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

#####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새로이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 현행                                                                                                               | 개정안                                                                                                                                                                                                                                                      |
|------------------------------------------------------------------------------------------------------------------|----------------------------------------------------------------------------------------------------------------------------------------------------------------------------------------------------------------------------------------------------------|
|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생략)                                                                                            |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현행과 같음)                                                                                                                                                                                                                                |
|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u>&lt;후단 신설&gt;</u> | ② -----<br>----- <u>다음</u><br><u>각 호의 방법으로</u> -----<br>-----<br>----- <u>. 이 경우 의견</u><br><u>청취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u>                                                                                                                                     |
| <u>&lt;신설&gt;</u>                                                                                                | <u>1.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u><br><u>해당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주</u><br><u>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관련된 법</u><br><u>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할 것</u>                                                                                                                                        |
| <u>&lt;신설&gt;</u>                                                                                                | <u>2.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에</u><br><u>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u><br><u>또는 도서(圖書)를 제공할 것</u><br><u>가.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u><br><u>한 사항</u><br><u>나.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구조 및</u><br><u>재질 등에 관한 사항</u><br><u>다.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u><br><u>통약자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u><br><u>사항</u> |
| ③·④ (생략)                                                                                                         | ③·④ (현행과 같음)<br>부칙<br>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sup>5)</sup>과 여객시설<sup>6)</sup>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현행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sup>7)</sup>에 따른 설치기준<sup>8)</sup>에 맞는지 심사(이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예시)

- 버스의 수직손잡이의 지름은 30밀리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 차량의 출입구 통로는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 철도차량의 장애인전용화장실의 문은 미닫이식으로 하고, 출입문 옆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여객시설의 통로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한다.

하 “기준적합성 심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이 때 의견청취의 방법에 관해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해당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의견청취 대상을 선정하고, 심사 대상이 되는 이동편의시설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며, 최소 14일 이상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준적합성 심사 시 의견청취의 방법에 관한 현행 규정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
|-----------------------------------------------------------------------------------------------------|------------------------------------------------------------------------------------------------------------------------------------------------------------------------------------------------------------------------------------------------------------------------------------------------------------------------------------------------------|
|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br>1.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할 것<br>2.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圖書)를 제공할 것<br>가.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br>나.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구조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br>3. 의견청취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할 것 |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의견청취 대상 법인·단체의 선정, 제공하는 자료,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법률로 옮겨 규정하면서, 교통행정기관이 의견청취 대상 법인·단체에 제공하는 자료에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안 제12조제2항제2호 다목)를 새로이 추가하고 있음.

교통약자 만족도 조사는 현행법 제25조<sup>9)</sup> 및 시행규칙 제11조<sup>10)</sup>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할 때 세부사항으로 포함하여 실시하는 조사임.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 중 현행 제도와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 심사 시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로부터 의견을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 2의2.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1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청취하고자 할 때 제공하는 자료에 현행 규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구조 및 재질 등을 알 수 있는 도면·서류 등에 추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포함된 교통약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준적합성 심사는 교통행정기관이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의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의견청취 대상 법인·단체는 심사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실물을 경험하지 않고 도면 등 서류를 토대로 예상되는 불편 요소나 개선 필요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교통약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의견제시 전에 교통약자들이 기존의 다른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교통약자 만족도 조사는 교통수단 등에 대한 교통약자의 일반적인 만족도를 점수화하여 시계열적 변화, 지자체별 또는 비교통약자와의 교통복지 수준을 비교·평가하는 방식 그리고 아주 제한적으로 특정 몇 개 장소(2023년의 경우 홍대입구역과 서울역)를 정해 교통약자와 동행하여 불편사항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sup>11)</sup> 특정된 심사대상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대해 의견을

---

11) “종합 만족도는 전체 67.4점으로 조사되었으며 교통약자 66.0점, 비교통약자 70.8점으로, 비교통약자에 비해 교통약자의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202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147), “2022년의 종합만족도 점수와 2021년1)의

제시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자료로서의 활용성은 낮아 보임.

그리고 법제적 측면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관련 기술적 사항이나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의견 청취의 대상, 방법,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보다는 하위 행정입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어 보임.

#### 나. 국토교통부 의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동일 내용을 상향 입법하는 것은 개정 실익이 없으며, 여객시설 준공 전에 실시하는 적합성 심사에 사후 조사인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함.

---

종합만족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2021년(도 지역) 종합만족도는 67.3점, 2022년의 종합만족도 점수는 67.4점으로 약 0.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202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148)

## 2.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와 가족 등의 좌석 연결배정 노력의무 부여(안 제17조제3항 신설 등)

###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통사업자(버스, 철도, 선박, 비행기 등 교통수단을 운행 또는 운항하거나, 터미널, 정류장, 공항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함<sup>12)</sup>)에게 교통약자의 좌석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의 좌석을 연결하여 배정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

#### 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1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①<br>· ② (생략)<br><u>&lt;신설&gt;</u><br><br>③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①<br>· ② (현행과 같음)<br>③ <u>교통사업자는 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운항 중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이하 이 조에서 “가족등”이라 한다)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약자와 가족등의 좌석을 연결하게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br>④ -----<br><u>운영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좌석배정-----</u><br><br>부칙<br>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여 차량이나 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가족 등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는 교통약자의 경우, 장애인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도 보호자 좌석이 원거리에 배정되는 경우 적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을 연결하여 배정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해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는 좌석 연결배정 노력의무를 지는 주체를 교통사업

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업자는 버스, 철도,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운행 또는 운항하는 자뿐 아니라 좌석배정과 관련 없는 정류장, 터미널, 공항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sup>13)</sup>, 의무주체를 ‘교통수단을 운행 또는 운항하는 교통사업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나. 관계 기관 등 의견

### 1)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지원을 위해 개정안에 따른 규정(안 제17조제3항) 신설에 공감함.

### 2) 전국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

고속버스는 전좌석지정제로 운영 중으로, 연접좌석 배정을 강제화한다면 주말 등 만석인 차량의 매출손실, 일반시민의 경우에는 자리가 있음에도 인터넷, 모바일 앱 등 예매를 하지 못하여 이동수단에 대한 권리를 역으로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부담이나 비용은 고속버스 운송사업자(민간사업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에 연접좌석

---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배정에 따른 손실비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따른 운영손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선행조치가 필요함.

### 3)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교통약자와 보호자 좌석 연접배정을 위한 노력의무 보다 연접배정을 위하여 현장 예매 또는 온라인 예약 시 보호자 동행 여부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개정안에 찬성함.

|              |
|--------------|
| 문 의 처        |
| 02)6788-5584 |